

변호사시험과 평등*

-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법학박사

< 목 차 >

- I. 서 론
- II.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
- III.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 IV. 변호사시험과 평등
- V. 몇 가지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I. 서 론

지난 2009년 새롭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법학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게 되었다. 그 중 한 가지로서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그 이전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사법시험으로써 법률가를 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법시험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오랫동안 신분상승의 관문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가난한 집안 출신자라도 사법시험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법시험은 곧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후에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이념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 투고일 : 2013.12.2, 심사완료일 : 2013.12.16, 게재확정일 : 2013.12.20

변화에 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이제 가난한 집안 출신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으로 약칭함)는 법률가양성의 평등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예비시험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과연 부자들을 위한 제도인지, 변호사양성의 평등을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¹⁾

II.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

1. 개 관

먼저 이 문제에 관한 쟁점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신설 문제에 관해 필자가 대한변협 관계자와 논쟁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난 2013년 8월 19일에 발행된 『대한변협신문』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해당 신문이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채 법학전문대학원에 편파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필자는 말미에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변호사시험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13년 9월 16일에 발행된 『대한변협신문』에서 오은경 대한변협 사무차장은 필자의 견해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글을 실었다.²⁾ 이 글은 자못 흥미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이 글에서 이 쟁점들을 소개하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먼저 필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오은경 대한변협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으로 약칭함)의 반론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1) 이에 관한 최근의 문헌으로는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2013. 11), 101-113쪽 참고.

2) 오은경 대한변협 사무차장은 변호사이기도 하다.

2. 필자의 주장

위에서 시사를 한 것처럼, 필자의 주장은 지난 2013년 8월 5일에 발행된 『대한변협신문』의 기사 “서민 위한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 어디까지 왔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말하자면, 필자의 주장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 2013년 8월 19일자 『대한변협신문』에도 필자의 주장은 이 기사에 대한 반론으로서 게재되었다. 아래에서 이러한 필자의 반론 전문을 전재하도록 한다.³⁾ 아래는 필자의 반론 전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미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최근 우리나라에 돌아와 보니 그 동안 여러 흥미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법시험 존치논의’도 바로 그중 한 예에 속한다. 사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아나운서 비하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최근 케이블 TV의 “썰전” 등으로 명예회복(?)을 하고 있는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기도 하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그리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적 흐름과도 발맞추어 다시금 상당한 힘을 얻고 있는 듯싶다. 여기에는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와중에서 2013년 8월 5일자 대한변협신문은 “서민 위한 사다리 ‘사법시험 존치’ 움직임 어디까지 왔나?”라는 기사(이하 ‘기사’로 약칭함)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태도를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그리 길지 않은 이 기사를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어보았다. 몇 가지 점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쉽사리 동의할 수 없는 주장들도 눈에 띄었다. 그 동안 대한변협신문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찬반주장을 다수 실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동안 제시된 주장들을 지금 여기서 되풀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몇 가지 점에서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일정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려면, 논의 자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하고 있거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일면적으로만 소개하여 논의를 전개하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기사는 “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소개하면서 독일이 법률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이 아닌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한다. 그러나 독일은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대표적인 나라에 해당한다. 우리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국가시험

3) 양천수,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보면서, 『대한변협신문』 제459호(2013. 8. 19), 13쪽.

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시험은 오직 법과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만이 칠 수 있다. 그것도 우리처럼 여러 번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두 번밖에 칠 수 없다. 또한 지난 2003년 ‘법조인양성개혁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제1차 국가시험 성적에 법과대학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졸업자가 아니면 법조인이 될 수 없고, 제1차 국가시험은 법과대학의 졸업시험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법과대학 졸업자가 아니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달리 말해 법과대학 교육과는 무관한 우리의 사법시험 제도와는 분명 다른 제도이다. 기사는 이 점을 정확하게 소개했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일본과 미국의 법조인 양성 제도 역시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야 한다. 가령 일본은 예비시험을 인정함으로써 로스쿨 제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을, 미국은 로스쿨의 정원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우리처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개했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법률선진국들이 우리의 사법시험 제도와 유사하게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개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

기사 하단에 소개한 양재규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주장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처한 정확한 사실보다는 막연한 인상에 입각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로스쿨제도는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라는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등록금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이와 동시에 탄탄한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왜 법학전문대학원이 고액의 등록금을 도입한 것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인가지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등록금이 인상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고생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전형’ 방식으로써 저소득층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이른바 ‘서민을 위한 사다리’가 사법시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분명히 소개해 주었어야 한다.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열화”나 “양극화” 또는 “특성화과목 등의 폐강속출” 등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정원을 못박아 놓고, 이것도 모자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일률적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의 운용방식에 있는 것이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기사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피땀어린 노력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치열한 경쟁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잘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통해 학사운영을 하고 있고, 변호사시험 역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치열한 경쟁이 사법시험에만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필자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노정하고 있는 문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가 전공에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고시생으로 전락시키고, 또 많은 고시낭인을 양산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고, 바로 그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관해 여전히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여기서 필자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결하려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러려면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악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지 않고 막연한 인상론에 기대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화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3. 오은경 사무차장의 반론

2013년 9월 16일자 『대한변협신문』에서 오은경 사무차장은 필자의 글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⁴⁾ 아래에서는 이러한 오은경 사무차장의 글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소개하도록 한다.

1) 일본 로스쿨 실패와 예비시험 제도의 상관성

위에서 소개한 글에서 필자는 일본 로스쿨이 실패한 것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꼽았다. 이에 대해 오은경 사무차장은 일본 로

4) 오은경, “‘서민 위한 사다리’는 어디로 갔나: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 필요”, 『대한변협신문』 제463호(2013. 9. 16), 11쪽.

스쿨이 실패한 이유는 일본이 “엄격한 인가주의를 취한 우리와는 달리, ‘준칙주의’를 취하고 있어 무려 74개의 로스쿨이 난립하는 바람에 로스쿨 졸업자가 많고, 신 사법시험 응시자도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일본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것은 예비시험 제도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의 취약성

다음으로 오은경 사무차장은 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가 사법시험을 대체할 만큼 완전하지는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확충한 장학금이 진정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만약 장학금 혜택이 진정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면, 그야말로 잘 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로스쿨이 공개한 자료 어디에도 경제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과연 경제적 기준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장학금 수급자들이 진짜 저소득층인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려진 바 없다. 실제 운영상황을 전혀 확인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단지 탄탄한 장학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둘째, 오은경 사무차장은, 이를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는데, “탄탄한 장학제도가 있으면 기회균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탄탄한 장학제도가 있으면 기회균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오은경 사무차장이 볼 때, “로스쿨이 대학원 체제인 까닭에 대학 과정까지 의무적으로만 마쳐야만 하는 경제적 부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나아가 오은경 사무차장은 아무리 법학전문대학원이 탄탄한 장학금 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학전형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입학기준을 알 수 없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크고,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은 입학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한다. 그러면서 “2009~2012년

수도권 1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 현황을 보면,⁵⁾ 4년 동안 지방대 학생은 전체 입학생 4,692명 중 109명을 차지하여 2.3%에 불과하다. 반면 최근 4년간 사법시험 합격자 중 지방대 출신 비율은 3,523명 중 318명으로 9%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언급한다.

4)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

한편 오은경 사무차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겪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 기인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 미국 로스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필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송기춘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3년 2월 실시된 뉴욕주 변호사시험의 경우 뉴욕주 소재 로스쿨을 졸업한 첫 응시자의 73%가 합격하였고(2012년 2월 실시된 시험의 경우 첫 응시자의 62% 합격), 전국 인증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첫 응시자의 75%가 합격하였다(2012년 2월 실시된 시험의 경우 69% 합격). 이러한 합격률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로스쿨에서 수험공부에 치중한 강의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은경 사무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75% 정도의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시험공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과연 교육과정 자체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이라고 한다.⁶⁾

5) 법대의 존치

마지막으로 오은경 사무차장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변호사를 양성하는 나라는 우리 이외에 미국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되는 데 독일은 최저 7년, 영국은 6년, 오스트리아는 7년, 스위스는 전문변호사까지 되는 데 9년, 스웨덴은 8-10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학부제 교육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결론으로서 오은경 사무차장은,

5) 그러나 왜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만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궁금하다.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더 많은 수의 이른바 지방대 출신 학생들이 있는데 말이다.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의미인지 정말 궁금하다.

6) 강조는 인용자가 추가한 것이다.

박찬운 교수의 주장을 원용하여,⁷⁾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III.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1. 개 관

『대한변협신문』 기사에 대해 필자가 반론을 펴고, 이에 대해 다시 오은경 사무차장이 재반론을 펼침으로써 일단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논쟁은 끝이 난다. 원래 필자는 오은경 사무차장의 재반론 글을 읽고, 이를 다시 반박하는 글을 기획하였으나, 이미 필자가 본래 의도한 바는 필자의 글을 통해 충분히 개진하였고, 오은경 사무차장의 글 자체가 명백하게 서로 모순되는 쟁점들을 담고 있어 재반론을 포기하였다.⁸⁾ 그러나 오은경 사무차장의 글에 대해 필자는 여전히 반박하고자 하는 쟁점들을 갖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오은경 사무차장의 글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한다.

2. 일본 로스쿨의 실패와 예비시험 제도의 상관성에 관해

먼저 일본 로스쿨 제도의 실패와 예비시험 제도의 상관에 관해 살펴본다. 이에 대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필자가 일본이 도입한 예비시험 제도가 일본 로스쿨이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했다면, 오은경 사무차장의 반론은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⁹⁾ 일본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¹⁰⁾ 우리처럼 엄격한 인가주의를 취하지 않고, 준칙주의

7) 박찬운,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33호(2013. 5).

8)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비용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법학교육이 너무 짧다는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법과대학 교육은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새겨야 하는 것일까?

9) 물론 필자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10) 물론 그 전에 일본 로스쿨 제도가 과연 ‘실패’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관

를 채택한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원인은 다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일본이 로스쿨과 더불어 법학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본의 전체인구에 비추어볼 때 너무 적은 수의 신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일본은 법학부 교육과 로스쿨 교육을 병존시키는 투트랙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체 법학교육이 로스쿨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 도쿄대 등과 같은 명문대학들이 법학부를 존치시킴으로써 해가 지나도 로스쿨의 위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법학의 중심이 여전히 법학부에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¹²⁾ 나아가 일본은 일본의 전체인구 및 법학부 그리고 로스쿨 재학생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유지함으로써 로스쿨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본 로스쿨 제도가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은 무분별한 준칙주의와 이에 따른 실력 없는 로스쿨이 난립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법학부를 유지하면서 신사법시험의 합격자수마저 적게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사법정책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로스쿨 학생들의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극히 저조한데도, 예비시험까지 인정함으로써 예비시험이 일본 로스쿨이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 같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3.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의 취약성에 관해

다음으로 오은경 사무차장이 지적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의 취약성에 관해 본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확충한 장학금이 진정 저소득층에게 귀속되고 있는지, 경제적 기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같은 반론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인상론’이라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장학금을 어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하고, 이 중에서 경제적 기준을 어떻

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로스쿨이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2012년 당시 신사법시험 합격률이 25.1%까지 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 11) 그러나 현재 인구가 약 5천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보다 인구가 3배 많은 인구 약 1억 2천만명의 일본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의 3배보다 한 개 적은 수인 74개의 로스쿨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을 과연 로스쿨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 12) 이는 필자가 법학전문대학원 동료 교수들과 지난 2008년 여름 일본 로스쿨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일본 관서의 명문인 同志社大學, 立命館大學, 京畿大學, 關西學園大學 로스쿨을 방문해서 해당 교수들을 인터뷰했을 때 느낀 점이기도 하다.

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대한변협 산하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¹³⁾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를 받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이 기준은 바로 대한변협 사협회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대한변협 사무차장이나 되는 오은경 변호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를 비판했다는 것은,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그 얼마나 막연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예증한다고 생각한다. 평가기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은 경제적 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해야 한다.¹⁴⁾

4.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에 관해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에 관해 본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입학기준을 알 수 없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크고, 비명문대, 지방대 출신은 입학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기준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 요소로서 어학점수와 학부성적 및 LEET 점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그 비율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다윈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지원자의 잠재적·총체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평가요소로 고려한다. 이렇게 현재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마련한 입학기준은 한편으로는 다윈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성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이는 성적이라는 정량적 기준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사법시험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¹⁵⁾ 그러나 이것만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기준을 알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

13) 대한변협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2011), 111-113쪽.

14)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해 일정 부분 성적기준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에 따라 이러한 성적기준을 경제적 기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사정이 아주 좋지 않은데도 성적이 아주 나빠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업성취도가 아주 낮은 경우에도 무조건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학생들은 설사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서도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그러나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제3차 시험이라는 면접 및 집단토론 시험을 통해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지원자를 탈락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면접 및 집단토론이 정성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 않다. 현재의 입학기준만을 놓고 보아도 지원자가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자기가 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얼마 전에 참여연대가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해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¹⁶⁾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아래에서는 더욱 많은 이른바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있다.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은 비수도권 1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확연하게 검증할 수 있다. 오은경 사무차장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15개의 법학전문대학원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대 출신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의 경우보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이다. 이는 마치 지방에 소재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풍긴다.

5.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관해

이어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관해 본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미국 로스쿨의 예를 언급하면서 응시자의 75%를 합격시키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체제 아래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¹⁷⁾ 요컨대, 문제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는 크게 다섯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총입학정원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입학정원을 통제하고 있다. 미국 로스쿨은 재학생의 합격률이 떨어지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그 반대로 합격률이 올라가면, 정원을 늘릴 수도 있다. 그 모든 것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국가가 총입학정원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둘째,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재학생의 75%가 아닌 응시자의 75%를 합격자로 미리 정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시험 실질 합격률은 앞으로 이보다 더욱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예정했던 이상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셋째,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전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상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

16) 참여연대,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2013) 참고.

17) 우리가 모델로 삼은 미국 로스쿨이 완전하지 않고, 요즘 들어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브라이언 타마나하, 김상우(옮김), 『로스쿨은 끝났다: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미래인, 2013) 참고.

한 상대평가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학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자신이 관심을 갖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과목이나 전문과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넷째,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과 더불어 법적으로 사고하기를 주된 평가대상으로 하는 미국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우리 변호사시험은 법적 지식, 그 중에서도 판례의 태도를 정확하게 아는지를 주된 평가대상으로 한다. 즉 종전의 사법시험에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던 기록형 시험을 혼합한 것이 현재의 변호사시험이어서, 시험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법적 사고력이 아니라 법적 지식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3년 과정이 아주 짧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출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마지막 학기가 종료하고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까지 겨우 1개월의 시간적 여유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미국 로스쿨의 경우에는 로스쿨 학기가 종료하고 변호사시험을 보기 전까지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한다. 미국 로스쿨 학생들도 수험공부로부터 분명 자유롭지는 않다. 다만 그 기간이 우리와 비교할 때 짧을 뿐이다. 우리도 이를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을 2월말에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마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법학전문대학원과 미국 로스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 법대의 존치에 관해

마지막으로 법대의 존치에 관해 본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법대의 부활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자기모순적인 주장이다. 오은경 사무차장은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고비용을 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률가 양성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은경 사무차장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서민의 사다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대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법과대학 4년 과정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닐까?

또한 지난 사법시험 체제 아래에서도 법과대학 재학 중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이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 아닌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법과대학 4년 과정을 마친 후 이른바 신림동 학원에서 약 3년 정도를 더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사법시험이 아니었던가? 이뿐만 아니라, 일본 로스쿨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법학부를 유지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IV. 변호사시험과 평등

지금까지 필자와 오은경 사무차장 사이에서 전개된 논쟁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변호사시험 체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제도가 비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⁸⁾

1.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

1)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

왜 우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써 법률가를 양성하겠다는 이념을 제시할 수 있다. 종전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법과대학을 졸업했는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수의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법과대학 교육보다는 신림동으로 대변되는 학원교육에 더욱 몰입하였다. 사법시험 경쟁률이 격화되면 될수록 법과대학 교육이 호황을 누리기보다는 신림동 학원들이 호황을 누렸다.¹⁹⁾ 다소 격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되는

18)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론: 기초법학을 예로 하여”, 『사회과학연구』(영남대) 제27집(2008. 2), 63-87쪽; 최대권, 『법학교육 · 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박영사, 2003) 등 참고.

19) 이 때문에 신림동 학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고시신문인 『법률저널』은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옹호한다.

데 법과대학 교육은 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법과 대학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전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즉 학문분야에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전 학문분야에 걸쳐 늘어나면서 대학교육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²⁰⁾ 바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써 법률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2) 변호사의 위상 변화

이렇게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바꾼 것은 법률가, 특히 변호사의 위상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 종전에는 판사, 검사와 더불어 변호사가 '법조삼륜'이라는 이름 아래 일종의 특권층으로 군림하였다. 이는 사법시험이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과거시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일반적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이 일제시대의 고등문관시험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고등문관시험이 해방 이후 고등고시와 사법시험으로 연결되면서 사법시험은 곧 출세를 위한 관문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될 수 있었던 변호사 역시 조선시대의 관리나 일제시대의 고등문관과 유사한 지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대한변협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내세우는 '서민의 사다리'나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변호사가 사다리 위에 있는 직업이라는 또는 용이라는 자기정체성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민주화·다원화·전문화가 지배하는 오늘날 변호사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법적 조력을 하는 것을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역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이해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오늘날 변호사를 과거의 관리 혹은 고등문관과 유사한 직업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변호사 역시 의사처럼 전문직업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법률가 역시 전문 법학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오늘날 변호사는 더 이상 특권층이 아니라, 전문직업인의 일종인 것이다.

3) 사법시험의 폐해

20) 이는 이른바 서울대 비법대 출신자들이 서울대 법대 출신자들과 더불어 사법시험 합격자들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사실이 잘 예증한다.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바꾼 것은 종전의 사법시험이 유발하는 폐해와도 무관하지 않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첫째, 종전의 사법시험은 합격률이 극히 낮아 우리 사회의 고급인력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법시험 공부로 낭비되는 폐해를 낳았다. 이른바 무수한 고시낭인들이 사법시험 때문에 양산된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법시험 응시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전 학문분야의 대학생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폐단을 야기하였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부가 사법시험 준비로 몸살을 앓아왔다. 이 역시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낭비일 수밖에 없었다. 서민의 사다리를 존치한다는 명목 아래 더 큰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희생을 치를 만큼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 아닐까?

4) 지역균형발전

이는 다소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도 담고 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주의'에 맞서 법률가 양성의 측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고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존치시키거나 예비시험을 새롭게 도입하면, 이제 겨우 안착하기 시작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볼 때,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 변호사시험과 평등

1) 필자의 견해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체제는 비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인정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평등권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도 허용된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학전문대

학원의 설립취지를 고려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과 비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변호사시험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직업선택의 자유야말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제한이 많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제한 도구마틱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비례성 원칙을 검토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을 검토하면, 위에서 살펴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취지에 비추어볼 때 비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은 긍정할 수 있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을 검토하면, 법률가의 위상을 변화시키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법학전문대학원 자체는 지원자격에 차별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수단의 필요성도 긍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의 사법시험 체제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우리 사회에 더욱 많은 이득을 준다는 점에서 볼 때 수단의 비례성도 인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근거에서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는 비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갖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헌법재판소의 태도

이를 뒷받침하듯, 이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4월 24일에 선고했던 2009헌마 608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에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며, 과도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음으로 인한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사법시험 병행제도 및 예비시험 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특별전형제도, 장학금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병행 실시하도록 하여 기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그것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의 취득에 있어서 경제력에 따른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경제력에 따른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써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등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V. 몇 가지 제언 - 결론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어떻게 하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

1. 입학전형 개선

우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방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필자가 주장한 것처럼, 현재로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방식은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 입학전형방식이 지원자들의 법학적성이나 잠재력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를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들의 실제적인 법학적성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아직까지는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성적 사이에 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¹⁾ 따라서 현행 법학적성시험이 지원자들의 법학적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방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속칭 비명문대 출신자라도 법학적성시험에서 고득점을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역균형발전 강화

다음으로 현재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수준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집권 내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법학전문대학원에도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대학육성사업을 지역 법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적용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예비시험 발전방향에 관해

이미 주장한 것처럼, 필자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예비시험을 신설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방식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은 일종의 타협책으로 모색할 수 있다. 필자는 사법연수원을 전제로 하는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더욱 나은 방안은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이다. 어학성적과 법학적성 시험 성적 및 기본적인 법학성적으로 구성되는 예비시험을 도입하고, 이 예비시험의 합격자를 1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예비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국가가 전액장학금을 부담하고, 이렇게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한 자원은 정원의 자원으로 유지한다. 나아가 이 자원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

21)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객관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의 자원으로 인정하여, 예비시험 합격자 가운데 75% 정도가 변호사시험에 별도로 합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편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의 사다리’ 역시 존치시킬 수 있는, 이른바 서로가 ‘윈-윈’하는 방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김호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 양상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결정”, 『외법논집』 제37권 제4호(2013. 11).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2011).
- 박찬운, “스웨덴 Advokat 제도와 법학교육 그리고 한국 로스쿨 법학교육의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433호(2013. 5).
- 양천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론: 기초법학을 예로 하여”, 『사회과학연구』 (영남대) 제27집(2008. 2).
- 양천수, “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보면서”, 『대한변협신문』 제459호(2013. 8. 19).
- 오은경, “‘서민 위한 사다리’는 어디로 갔나: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제도 도입 필요”, 『대한변협신문』 제463호(2013. 9. 16).
- 참여연대,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 (2013).
- 최대권, 『법학교육 · 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3).
- 브라이언 타마나하, 김상우 (옮김), 『로스쿨은 끝났다: 어느 명문 로스쿨 교수의 양심선언』 (미래인, 2013).

[Abstract]

Bar Exam and Equality

- Issues around the Legal Education Reform in South Korea -

Yang Chun-Soo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Since a new legal education system (i.e. law school system) was launc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s legal education has met various new paradigms and issues. One of those is that now only graduates from accredited law schools may sit for the new national bar exam. Before the new bar exam in law school system, the college of law system and the state law exam were playing a role of legal training. One of the important points there is that the state law exam has not restricted the qualification for taking the exam. Thus, even those who have not graduated from colleges of law have been allowed to take the state law exam as they fulfill certain conditions the state law exam requires. For that reason, the state law exam in South Korea for a long time has been used as a ladder of social success. Even those who are from a poor family could seek to social success by using the state law exam. However, because of launching the law school system, the state law exam is scheduled to be abolished soon. One of the reasons for this change is that lawyer should be trained not by exam, but by legal education. However, not only the law school system, but also the new national bar exam now should meet many critiques because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is very expensive. For that reason, many critics argue that those who are from a poor family may not enter law schools and then are not able to take the exam. In particular, the Korean Bar Association now argues that the state law exam should not be abolished for equality on legal training. The Bar Association criticizes the new legal education system because it is not fair. It is just an institution for the sake of the rich. In this context, the

presenter would like to explore whether the law school system is just an institution for the rich class, and whether the state law exam should be maintained for equality on legal training.

key words : korean law school, bar exam, state law exam, the Korean Bar Association, equality